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 10. 조례 제2301호
일부개정 2012. 2. 29. 조례 제2387호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80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3013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안양시민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 2. 29.]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안양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와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공공기관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5조(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전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29.]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목개정 2012. 2. 29.]

제7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9.]

제8조 삭제 <2014. 11. 14.>

제9조 삭제 <2012. 2. 29.>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운영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1.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제13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작은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제14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 이용회원은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29.>

제15조(입관의 제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의 자료는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제1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8. 12. 28.>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18. 12. 28.>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독서와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1.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28.>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 12. 28.>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2. 29.>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21조(작은도서관 분쟁조정) ① 작은도서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주민 15명 이상의 연서로 안양시의 작은도서관 지도감독업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9.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8.>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학교)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은도서관은 독서회원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와 대출이력은 반납예정일, 연체사실 통보 등 도서관리와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학교), 연락처**

■ 보유 및 활용기간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 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

- ○○작은도서관은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상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작은도서관 독서회원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작은도서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___(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법적대리인)_____(인)신청자와의 관계( )